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20

발의연월일: 2020. 10. 14.

발 의 자:이용호·최종윤·김수흥

강병원 · 한병도 · 이상헌

안호영 • 민병덕 • 정성호

김영호·소병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계층의료비 지원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와 관련, 제41조의2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이하'약가인하')하거나 요양 급여의 적용을 정지(이하'급여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99조 제2항 및 제3항은 급여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약가인하', '급여정지'의 행정제재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사의 처방권 훼손 및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저해 등 공공복리를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이 법이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공공복리가 더욱 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약가 인하', '급여정지'의 행정제재를 유지하면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행정제재와 동등이상의 제재 효과를 발생시키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금액은 취약 계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이 법의 행정제재를 환자의 건강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공익적 목적의 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는 경우 또는 제9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5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액은 그 전액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 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9조의2(공익적 목적의 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
	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약
	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u> 상한금액의 감액에 갈음하여</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u> 비용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u>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u><신 설></u>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
	2제3항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
	여적용을 정지하는 경우 또는
	제9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
	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공의 복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
	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5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u>다.</u>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
	<u>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u>
	<u>과·징수하는 금액은 그 전액</u>
	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
	원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u>한다.</u>